



##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항 공고 안내

---

### 1. 관련근거

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1.1.2.)

나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42(2021.1.2.)
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위 호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을 전국으로 안내드린바 있습니다. 이 중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·행사 시 준수해야 하는 방역 조치사항은 행정명령의 대상이 장소·시설이 아니라 국민으로, 그간 지자체에서 특정 장소·시설에 행정명령을 내려왔던 전달체계와는 다소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.

3. 행정절차법 제 14조에 따르면,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보, 공보, 게시판,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 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4. 이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·행사 관련 방역지침 의무화 사항 (공고문(안))\*을 붙임으로 송부해드리니 각 지자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게시판에 공고 등(송달방식은 지자체에서 취사선택 가능) 조치하여 주시고, 홈페이지에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\* 게시판에 부착하기 위한 공고문(안)은 예시이며,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모임·행사 인원 기준, 준수해야하는 방역지침이 상이하므로 적절하게 수정하여 활용할 필요

붙임 공고문(안) 1부. 끝.

##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

수신자 본부각과장, 중앙행정기관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17개 시도



주무관 **강재희** 행정사무관 **이리향** 생활방역팀장 **김정숙** 전략기획반장 **손영래** 전결 2021. 1. 4.

협조자

시행 **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235** 접수 **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 (2021. 1. 5.)**  
과-32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(정부세종청사 10동) / <http://ncov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1722 팩스번호 044-202-1971 / [jaehuekang@korea.kr](mailto:jaehuekang@korea.kr) / 비공개(5)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